

의안번호	2219649
의 퇴 인	이상희의원
회 답 일	2026. 8. 25.
추 계 번호	26B31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u> 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하한을 상향(현행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하여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¹⁾은 정부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

1) 법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²⁾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지급 현황(2023~2025년)

(단위: 건)

지급 구간	2023년	2024년	2025년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232	345	35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112	59	122
3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103	55	64
7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71	75	253
120만원 이상 ~ 180만원 미만	11	40	125
18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24	24	119
250만원 이상 ~ 330만원 미만	7	9	19
330만원 이상 ~ 420만원 미만	3	2	17
420만원 이상 ~ 510만원 미만	0	1	20
51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3	1	4
600만원 이상 ~ 690만원 미만	0	0	3
690만원 이상 ~ 780만원 미만	0	0	0
780만원 이상 ~ 870만원 미만	0	0	0
87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0	0	0
합계	566	611	781

주: 신고자 1명이 여러 건의 취약점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구간별 지급건수로 산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시행령 [별표 4의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 나. 지급 기준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포상금 지급건수 및 건별 지급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건별 지급액은 지급 범위에서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 포상금 지급액은 매건마다 상이하게 산정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가. 지급 대상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하 “신규정보보호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지급 기준

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포상금의 지급 절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포상금의 환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가. 신고한 정보보호 취약점을 일정 기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나.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취약점 정보를 획득하여 신고한 경우
- 다.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포상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